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6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정준호, 김경훈, 김용호,
김재진, 남궁역, 박유진,
봉양순, 송재혁, 왕정순,
이소라, 이영실, 이은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 위생조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저수조의 원활한 위생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상위법(「수도법」 제33조제2항) 개정에 맞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와 위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40조의2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1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신설>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④ 제2항----- ----- ----- ----- ----- -----.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① -----

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신 설>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
----- 「수도법 시행
령」 제51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③ · ④ (생략)

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87조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위법(「수도법」 제33조제2항) 개정에 맞춰 대
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와
위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